

일제하 臺灣 蕃地 통치체제의 형성과 전개

— 蕃地 경찰조직의 설치와 운영을 중심으로

文明基*

- | | |
|------------------------------|-------------------------------------|
| I. 머리말 | IV. 隘寮에서 駐在所: 蕃地 경찰관서의 설치와 변화 |
| II. 理蕃政策의 개관: 撫蕃, 討蕃, 治蕃 | V. 銃器 回收과 島內 殺傷의 추이: 蕃地 경찰조직 수립의 효과 |
| III. 隘勇에서 警手로: 準警察人力의 창설과 운용 | VI. 맺음말 |

• 국문초록

撫蕃에서 討蕃을 거쳐 治蕃으로 일단 완성을 보게 된 대만총독부의 이번 정책 과정에서 번지 경찰조직의 설립과 운영은 가장 중요한 정책적 과제 중 하나였다. 특히 애용·경수로 대표되는 준경찰인력의 창설과 운영은 보통행정구역(=평지)의 경찰조직 운영에서는 볼 수 없는 번지 경찰조직의 독특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또 준경찰인력은 정규 경찰인력의 47.6%에 달할 정도로 방대한 규모였다. 일제하 대만의 경찰력을 평가할 때 준경찰인력의 존재를 무시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아울러 감독소-분견소-애료로 이어지는 번지 경찰관서의 체계가 ‘이번사업’의 완성 이후 주재소로 일원화되는 과정은 달리 말하면 총독부의 번지 통치의 안정화를 반영한 변화이기도 했는데, 번지 경찰관서를 대표하는 주재소는 평지 경찰관서를 대표하는 파출소의 약 52%에 달했고, 그 배치 역시 대단히 촘촘했다. 전체 인구의 약 3%에 불과한 번인 인구를 통제하기 위해 대만총독부가 얼마나 많은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했는지를 엿볼 수 있기도 하다.

* 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부교수.

이러한 대대한 인적·물적 자원의 투입 결과 번지에는 경찰조직에 의한 일원적인 지배체제가 성립했고, 이는 공인된 폭력으로서의 근대적 공권력이 대만 번지 역사상 최초로 수립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공권력의 수립은 우선 번인이 보유한 총기에 대한 철저한 회수로 나타났고, 그 결과 번인의 저항력을 근저에서 해체하고 국가권력 이외의 사적 무장력을 거의 허용하지 않는 단계에까지 도달하게 된다. 총기의 철저한 회수는 번지에서의 다양한 형태의 살상을 크게 줄이는 결과로 이어졌는데, 번인에 의한 내지인과 한인 살상뿐만 아니라 번지 사회의 오랜 관행이기도 했던 번인 간의 상호살상, 나아가 내지인과 한인에 의한 번인 살상 역시 큰 폭으로 줄일 수 있었다.

주제어 : 번지, 대만총독부, 이번사업, 준경찰인력, 주재소, 공권력, 번해

I. 머리말

청대 초기의 황제 康熙帝가 대만을 제국의 판도에 편입한 이래 대만은 기본적으로 서부 평원을 중심으로 생활한 漢人의 세계와 중동부 산악지대를 중심으로 생활한 原住民의 세계로 나뉘어 있었다.¹⁾ 番界라는 가상의 경계를 기준으로 平地와 蕃地의 두 세계가 공존한 것이다.²⁾ 청조 중앙은 격리(quarantine)를 원리로 하는 통치전략에 기반하여 한인의 번지 출입을 금지하고 번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방임의 상태(=化外之地)로 둬으로써 한인과 번인의 갈등과 충돌을 막고 새롭게 편입된 변경 지역의 질서를 유지하고자 했다.³⁾

번계를 경계로 한 두 세계의 공존은 1874년 臺灣事件을 계기로 크게 변화하여, 청조 중앙은 기존의 격리에 기반한 현상 유지 방침을 폐기하고 일종의 동화주의에 기반한 번지에 대한 실질적인 통치, 즉 開山撫番을 단행하게 된다. 닫혀있던 번지가 열리게 된 것이다.⁴⁾ 1874년을 기점으로 시도된 동화주의 통치전략은 이후 식민지시대(1895~1945)와 국민당 통치 시대(1945~2000)에도 기본적으로 계승되어 갔다.⁵⁾

- 1) 통상 대만의 4대 족군(族群, ethnic group)으로서 閩南人, 客家人, 外省人과 함께 원주민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원주민은 일반적으로 평지에 거주하는 平埔族과 산지에 거주하는 高山族을 아울러 지칭하는 용어이다. 하지만 본고가 다루는 일제하 대만에서는 대체로 평포족(청대의 熟番)을 제외한 고산족(청대의 生番)만을 ‘蕃人’으로 지칭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원주민’과 식민지시대에 사용된 ‘번인’은 그 범주가 다르다. 따라서 필자는 머리말을 제외하고는 ‘번지에 사는 원주민’이라는 의미로 ‘번인’을 사용하기로 한다. 청대에 사용되던 ‘蕃’이나 식민지시대에 사용되던 ‘蕃’은 人(또는 民)에 상대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현재의 감각으로는 부적절한 용어이지만 사료 용어로서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다만 번인 7개 종족 중 아미족(アミ族)이나 푸유마족(プユマ族)은 평지의 보통행정구역에 거주했지만, 이들 역시 총독부로부터 ‘충분히 진화하지 못한’ 종족으로 평가되고 있었기에 번인에 포함되었다(菊池一隆, 「日本の理蕃政策と臺灣原住民-戰時期を中心に」, 『人間文化』 28, 愛知学院大学人間文化研究所紀要, 2013, 2면).
- 2) ‘番’과 ‘蕃’은 모두 ‘야만적이고 개화하지 못함(蠻荒未開化)’을 의미한다. 청대에는 ‘番’을 주로 사용했지만, 일본어 중에 ‘番’이 들어간 단어, 예컨대 番地(번지), 番人(파수꾼), 番號(번호) 등이 많았기에 혼동될 우려가 있어서 식민지시대에는 ‘蕃’이 사용되었다(石丸雅邦, 「臺灣日本時代の理蕃警察」, 國立政治大學 政治學系 博士學位論文, 2008, 서론, 8면).
- 3) 柯志明, 『番頭家-清代臺灣族群政治與熟番地權』, 中央研究院 社會學研究所, 2001.
- 4) 1874~1895년의 개산무번 정책에 관해서는 문명기, 「清末 臺灣 建省과 劉銘傳-재정확보 방안을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7을 참조.
- 5) 1874년부터 1895년까지의 동화주의적 원주민 정책에 대해서는 伊能嘉矩·栗野傳之丞, 『臺灣蕃人

하지만 1980년대 이래 정치적 민주화와 사회적 자유화의 진전에 따라 기존의 국민당 중심의 중화 민족주의를 대체하는 새로운 국민통합 원리를 찾는 과정에서 대만 민족주의를 주장하는 새로운 정치·사회 세력은 동화주의를 대신하여 다문화주의에 기반한 국민통합을 시도해왔다(대체로 2000년 이후). 다문화주의에 기반한 새로운 국민통합의 시도는 자연스럽게 그에 걸맞은 새로운 역사상을 요구했다. 새로운 역사상의 요구는 그동안 소외되어온 원주민 세계의 역사에 관한 관심을 촉발했고, 그 결과 원주민의 역사와 문화가 주목받게 되었다.⁶⁾ 이러한 움직임은 한인 중심의 역사로만 이해되어온 대만의 역사를 균형 있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고, 또 한인에 의한 일방적인 동화만을 강조하기보다는 역사 속에 실재했던 다양한 인간집단의 상호 관계와 상호 영향에 더 주목하게 함으로써 대만사를 더욱 풍부하고 다채롭고 이해할 가능성을 높인다는 면에서 의미 있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⁷⁾

그런데 원주민의 생활 공간, 즉 번지가 실질적인 통치의 영역이 된 것은 식민지시대였다.⁸⁾ 근대적 무기체계와 방대한 군사력 및 경찰력에 뒷받침된 식민지 권력의 소위

事情』, 臺灣總督府民政部文書課, 1900, 168~174면, 식민지시대의 동화주의적 원주민 정책에 대해서는 北村嘉恵, 『日本植民地下の臺灣原住民教育史』, 北海道大學出版會, 2008(특히 제2부), 1945년 이후 국민당 정부의 원주민 정책에 관해서는 松岡格, 『臺灣原住民社會の地方化-マイノリテイの20世紀』, 研文出版, 2012(특히 제2부) 등이 참고가 된다. 또 1990년대 이후의 대만 사회 다문화주의의 성행과 그 문제점에 관해서는 石垣直, 「現代臺灣の多文化主義と先住權の行方-原住民による土地をめぐる權利回復運動の事例から」, 『日本臺灣學會報』 9, 日本臺灣學會, 2007을 참조.

- 6) 이러한 대만 역사학계의 동향에 관해서는 張隆志, 「當代臺灣史學史論綱」, 『臺灣史研究』 16-4, 中央研究院 臺灣史研究所, 2009; 周婉窈, 「山·海·平原: 臺灣島史的成立與展望」, 張隆志 編, 『島史的求索-臺灣史論叢(史學篇)』, 臺灣大學出版中心, 2020 등을 참조.
- 7) 이에 관해서는 문명기, 「대만에도 독자적 역사가 있는가?族群政治(ethnic politics)의 관점에서 본 대만의 역사」,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학술회의(대만인의 탄생·미·중 갈등과 위기의 다중 정체성) 발표문(2022년 2월 23일)을 참조. 한편 일본 학계의 대만 원주민 연구는 대체로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과 비판을 강하게 의식한 연구들이 상대적으로 많다. 戴國輝 編著, 『臺灣霧社蜂起事件-研究と資料』, 社會思想社, 1981; 春山明哲, 『近代日本と臺灣-霧社事件・植民地統治政策の研究』, 藤原書店, 2008, 台灣原住民研究シンポジウム実行委員會編, 『台灣原住民研究-日本と台灣における回顧と展望』, 風響社, 2006년; 傅琪貽, 「台灣原住民における植民地化と脱植民地化」, 『岩波講座アジア太平洋戦争4』, 岩波書店, 2006 등의 연구는 식민지 권력이 원주민에 행한 정치적 억압과 경제적 착취의 실상을 폭로하고 반성을 촉구한다는 문제의식이 저변에 깔려 있다.
- 8) 번지에 관해서 1903년 총독부는 “隘寮는 民蕃(한인과 변인·필자)의 경계에 세워져서 호응하여 서로 구제할 수 있는 거리를 두고 건설된 초소로서, 애료에 소위 隘丁을 배치함으로써 兇蕃의 출입을 감시하는 데 쓰고 있었다. 그러므로 현재로서는 蕃地와 平地의 경계는 이 隘勇線에 따라 구분할

理蕃政策(번지와 번인에 대한 실효적 지배의 실현과 일련의 통치 정책)은 비교적 짧은 기간에 근대 국가권력을 번지에 침투시키는 데 성공했다.⁹⁾ 다만 대만총독부는 전체 기간에 걸쳐, 보통행정구역으로 설정한 서부 평원과 달리 번지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법규와 행정이 적용되지 않고 사실상 경찰에 의한 일원적 통치가 행해지는 ‘특별행정구역’으로 설정했다.¹⁰⁾ 즉 번지 경찰은 번지의 유일한 권력기관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식민지시대 번지·번인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번지 경찰조직에 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본고는 식민지시대 번지 경찰조직의 형성 과정, 그리고 경찰 권력의 확립이 초래한 효과의 일단을 살펴보고자 한다.

식민지시대 대만 번지에 설치된 경찰조직은 크게 ① 警部에서 巡査에 이르는 정규 경찰인력과 隘勇·警手 등의 준경찰인력,¹¹⁾ ② 隘寮, 駐在所, 監督所 등의 경찰관서, 그리고 ③ 경찰인력과 경찰관서를 연결하는 물리적 네트워크로서 일종의 對蕃 警備線으로 사용된 隘勇線(1915년 이후는 警備道路 또는 理蕃道路)의 세 요소로 구성되어 있었다. ③에 관해서는 별도의 논문을 통해 다루기로 하고¹²⁾ 본고에서는 우선 ①과 ②를 다루고자 하는데, 특히 아래의 점에 유의하고자 한다.

첫째, 식민지시대 대만에는 정규 경찰인력 외에 번지 정복과 통치를 위해 별도로

수박에 없다.”라고 판단했다(〈蕃地ノ解釋に關スル決定〉, 臺灣總督府 警務局 編, 『理蕃誌稿』(第2編), 1918, 302면). 총독부의 번지 관련 규정은 대체로 이를 따르고 있었다.

9) 식민지시대 대만총독부의 이변정책에 관해서는 李文良 著, 北村嘉惠 譯, 「日本統治時期臺灣における理蕃政策」, 和田春樹 等編, 『(岩波講座)東アジア近現代通史』(第3卷), 岩波書店, 2010; 近藤正己, 「臺灣總督府の理蕃體制と霧社事件」, 若林正丈 等, 『(岩波講座)近代日本と植民地』(第2卷: 帝國統治の構造), 岩波書店, 1992; 藤井志津枝, 『理蕃-日本治理臺灣的計策』, 文英堂, 1997 등을 참조.

10) 특별행정구역으로 설정된 번지는 1931년 16,478km²로 평지 19,481km²에 필적하는 크기였다(臺灣總督府 警務局, 『臺灣の警察』, 1932, 14면).

11) 대만총독부는 1920년 이후 경시부터 순사까지의 경찰인력을 ‘警察官吏’ 또는 ‘警察官’으로 지칭하고 이들 ① 경찰관리에 ② 警手, 警察醫, 技師, 技手, 通譯, 雇員, 囑託 등 경찰 사무를 보조하는 자를 더하여 ‘警察職員’이라 지칭하고 있다. 필자가 말하는 준경찰인력은 경찰직원 중에서 경수(1920년 이전에는 애용도 포함)를 가리킨다(臺灣總督府 警察官及司獄官練習所 編纂, 『臺灣地方警察實務要論』, 1934(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Ref.A05020354000), 9면).

12) 隘勇線에 관해서는 鄭安晞, 「日治時期蕃地隘勇線の推進與變遷, 1895~1920」, 國立政治大學 民族學系 博士學位論文, 2011; 小島麗逸, 「日本帝國主義の臺灣山地支配-霧社蜂起事件まで」, 戴國輝 編著, 『臺灣霧社蜂起事件-研究と資料』, 社會思想社, 1981; 林一宏·王惠君, 「從隘勇線到駐在所-日治時期李崧山地區理蕃設施之變遷」, 『臺灣史研究』 14-1, 中央研究院 臺灣史研究所, 2007 등을 참고.

창설·운영된 준경찰인력(parapolice)이 존재했다는 점이다. 애용선의 방어와 번지 정복을 보조하기 위해 창설된 준경찰인력은 정규 경찰인력의 거의 절반에 달하는 방대한 규모를 이루고 있었다(후술). 따라서 번지의 전체적인 경찰력이나 경찰통치의 성격을 검토할 때 무시할 수 없는 존재였음에도 기존 연구는 이들 준경찰인력의 존재를 충분히 다루지 못했다.¹³⁾

둘째, 討蕃 단계(후술)를 거쳐 대만 역사상 최초로 근대적 공권력으로서 번지에 경찰조직이 성립하게 된 셈인데, 그렇다면 근대적 공권력의 성립 이전과 이후에 번지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가에 관해서도 자연스럽게 관심이 쏠린다. 본고에서는 토번 단계 전후의 번지에 발생한 변화 양상을 번인이 보유해온 총기 회수의 실태, 蕃害(번인에 의한 내지인·한인 살상), 번인 상호살상의 변화 등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하에서는 우선 기왕의 연구성과를 활용하여 대만총독부가 전개한 이번정책을 撫蕃 → 討蕃 → 治蕃 단계로 나누어 살펴보고(Ⅱ절), 번지 경찰조직의 성립과 변화 과정을 살펴보고, 준경찰인력의 창설과 운영(Ⅲ절), 번지 경찰관서의 설치와 변화(Ⅳ절)로 나누어 살펴본 후, 마지막으로 번지 경찰조직의 성립이 번지와 번인 사회, 나아가 대만 사회에 초래한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Ⅴ절).

Ⅱ. 理蕃政策의 개관: 撫蕃, 討蕃, 治蕃

번지·번인에 대한 점령과 관리, 즉 理蕃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총독부의 정책은 크게 撫蕃 단계(1895~1902), 討蕃 단계(1903~14), 治蕃 단계(1915~45)로 나눌 수 있다.¹⁴⁾ 초기에 해당하는 무번 단계에는 기본적으로 번지·번인에 대하여 군사력을

13) 예컨대 문명기, 「대만·조선의 '식민지근대'의 격차-경찰 부문의 비교를 통하여」, 『중국근현대사 연구』 59, 중국근현대사학회, 2013은 식민지 대만과 조선 경찰인력의 규모를 비교하면서 대만의 준경찰인력을 적절히 수량화하여 반영하지 못했다.

14) 이 시기 구분은 기본적으로 石丸雅邦, 앞의 논문, 1-1면에 따랐다(石丸의 논문은 章別로 면수를 달리하고 있다. 따라서 1-1면은 제1장의 1면을 가리킨다. 이후의 인용도 마찬가지이다). 다른 연구자들도 대체로 이와 같은 시기 구분에 따르고 있다. 다만 石丸(이시마루)은 1930년의 무사 사건을 경계로 하여 治蕃 단계(1915~1930)와 育蕃 단계(1931~1945)로 구분하고 있는데, 필자가 보기에 무사 사건 이후 총독부의 이번정책은 좀 더 정교해지고 '인도주의적 색채'가 가미되기는

활용한 공격적인 조치보다는 樟腦 채취, 製材, 開墾 등의 번지 개발에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군사력이나 경찰력의 사용은 기본적으로 제한되어 있었다. 초대 대만 총독인 가바야마 스케노리(華山資紀)가 번인에 관하여 ‘恩威並行’ 방침을 천명하면서도 가능한 한 직접적인 충돌을 회피하고 ‘綏撫’를 위주로 할 것을 훈시한 것은 이 시기 총독부의 對蕃 방침의 성격을 말해준다.¹⁵⁾ 점령 초기 서부 평원에서 예상외의 완강한 항일 무장투쟁에 직면한 총독부 입장에서 평지의 한인 진압과 동시에 산지의 번인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쉽지 않은 저간의 사정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¹⁶⁾

번지·번인 관련 사항을 주관하는 기관 역시 民政部 殖産課나 專賣局 등의 ‘식산 계통’과 ‘경찰 계통’으로 분리되어 있었다는 점도 무변 단계 이번의 중점이 무력 사용이 아니라 번지 개발에 두어져 있었음을 잘 보여준다.¹⁷⁾ 그 결과 번지 개발의 진전에 비례하여 번인에 의한 한인·내지인 살상, 즉 蕃害가 증가했음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웠다. 또 번지 통치의 기초가 되어야 할 각종 조사(예컨대 평지의 戶口調査簿에 해당하는 蕃社臺帳의 작성)나 지도 제작 역시 번지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에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없었다.¹⁸⁾

1896년 4월 군정에서 민정으로의 이행에 대응하여 번지를 특별행정구역으로 설정한 총독부는 번지에 (식민지 조선의 읍면에 해당하는) 街庄 등의 일반 행정기관을 설치하지 않고 청대의 撫墾局 제도를 참작하여 평지와 번지의 경계인 蕃界에 총 11개의 撫墾署를 설치했지만, 11개 중 9개는 번지에 인접한 보통행정구역에 설치되었고, 남부의 恒春과 동부의 臺東에 설치한 2개는 아예 평지에 설치된 것이었다.

했지만 무사 사건 이전 이번정책의 흐름과 본질적인 차이를 보였다고 보기는 힘든 것 같다.

15) 臺灣總督府 警察本署, 『理蕃誌稿』(第1・2編), 1918, 2면.

16) 평지에서의 무장 항일이 진압되는 것은 1902년 경이다(後藤乾一, 「下級兵士がみた植民地戰爭-臺灣における‘生蕃討伐’と加藤洞源」, 『アジア太平洋討究』 9, 早稲田大学アジア太平洋研究センター, 2007, 134~135면).

17) 石丸雅邦, 앞의 논문, 1~10면.

18) 1896년 11월에 부임한 총독 노기 마레스케(乃木希典)는 撫墾署에 번인·번지의 조사를 지시하여 평지의 호구조사부에 해당하는 蕃社臺帳 작성을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자 했지만 제대로 수행되지 못했다. 이러한 지지부진한 상황에 대하여 총독부는 “각 무간서에 지시한 (중략) 각종 조사는 기관의 축소와 함께 좌절되었다. (중략) 조사 성적은 대체로 미완인 채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다(臺灣總督府 警察本署, 『理蕃誌稿』(第1・2編), 128~129면). 번사대장이 실질적인 내용을 갖추는 것은 1910년 이후였다(小島麗逸, 앞의 논문, 55~56면).

번지에 설치된 무간서는 하나도 없었고, 이는 통치 초기 총독부의 통치력이 평지로 한정되어 번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데는 이르지 못했음을 의미한다.¹⁹⁾

이러한 식산 계통과 경찰 계통이 혼재된, 그리고 (번지에 대한 공세적 진입이 아닌) 번지 개발 중심의 이번정책은 1902년 발생한 南庄事件을 계기로 변화를 맞게 된다. 남장 사건은, 1902년 7월부터 12월에 걸쳐 新竹廳 南庄支廳 관내의 청말 이래의 歸化生番(=化番) 두목 아우카이(漢字名은 日阿拐) 등과 일본인 장뇌업자 사이에 맺어진 토지 임대차 계약에 관한 이견 및 그 대가의 미지급 문제를 둘러싸고 발생한 번인(賽夏族)과 장뇌업자·총독부 간의 충돌이었다.²⁰⁾ 사건 직후인 1903년 초 총독부는 ‘번인·번지 사항’을 식산국에서 警察本署(중앙)와 警務課(지방)로 이관했다.²¹⁾ 아울러 경찰본서의 수장인 警視總長 직속으로 이번정책을 전담하는 蕃務掛를 특설하고, 아울러 민정장관, 육군 참모장, 경시총장 등으로 구성된 蕃地事務委員會를 성립시켜 각 부서 간의 이견을 조정하여 이번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기구를 창설했다.²²⁾ 요컨대 통일적인 이번정책의 필요에 기초하여 법령 개정과 주관 기관의 선정(경찰 계통)을 통해 번인·번지 사무가 최초로 통일되기 시작한 1903년은 “이번 역사상 특필할 만한 혁신의 제1기”였다.²³⁾

이러한 이번 기관의 쇄신, 對蕃 방어와 공격의 물리적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는 隘勇線의 확장과 隘勇 제도의 정비, 監督所·分遣所·駐在所 등 번지 경찰관서의 정비·확충(후술)과 함께, 번지에 대해서도 수세적인 ‘무번’ 방침에서 공세적인 번인 토벌, 즉 討蕃으로 전환했다. 토번 방침의 절정이 1910년 5월부터 1914년 8월까지 실행된 五個年計劃理蕃事業(이하 ‘이번사업’으로 줄임)이다.²⁴⁾ 이에 대해서는 기왕의 연구가 적지 않고 또 여기서 상술할 여유는 없지만,²⁵⁾ ‘이번사업’은 대체로 귀순의 권고 → (권고에 응하지 않는 경우) 애용선의 전진(=군경의 투입과 전투) → 총기의 몰수 및 蕃社臺帳의 제출 → 歸順式 거행의 순서로 진행되었다.²⁶⁾ 사업이라는 이름을

19) 李文良 著, 北村嘉惠 譯, 앞의 논문, 169~170면.

20) 남장사건에 관해서는 林修澈, 『原住民重大歷史事件-南庄事件』, 國史館臺灣文獻館, 2007을 참조.

21) 李文良 著, 北村嘉惠 譯, 앞의 논문, 173면.

22) 臺灣總督府 警察本署, 『理蕃誌稿』(第1・2編), 278~280면.

23) 臺灣總督府 警察本署, 『理蕃誌稿』(第1・2編), 277면 및 300면.

24) 小島麗逸, 앞의 논문, 64면.

25) 藤井志津枝, 앞의 책 참조.

내걸기는 했지만 ‘이번사업’은 사실상의 전쟁이었다.²⁷⁾ ‘이번사업’을 통해 총기와 탄약을 몰수함으로써 무력 저항의 물리적 수단을 제거함과 동시에 변인 부락에 관한 정보의 총체인 번사대장을 제출하게 함으로써 ‘이번사업’ 이후의 治蕃을 준비한 것이다.²⁸⁾

‘이번사업’을 통해 변인의 무력 저항을 사실상 종결한 1915년 이후에는 특별행정 구역으로 설정된 변지의 보통행정구역으로의 전환, 수렵·어로에 주로 종사하던 변인의 定住農民化, 나아가 일본어 교육과 일본식 생활방식의 보급을 통한 内地化 등이 추구되는 治蕃 단계로 들어섰다. 구체적으로 蕃屋을 내지 방식으로 바꾸는 주거 생활의 변화, “쌀을 먹는 변인은 반항하지 않는다”라는 변지 경찰의 경험에 기초하여 변인 경제생활의 중심을 水田 농업으로 유도하기 위한 집단이주와 정착 농경의 강제, 일본어 중심의 초등교육 보급 등을 통해 변인을 ‘문명화’하는 등의 제반 정책이 강력하게 시행되었다.²⁹⁾ 여기에 변인 내지 관광 등의 일정한 사회교육을 시행하거나 경비도로(=변지도로)의 건설이나 목재의 벌채·운반을 위한 저임금 노동자로의 편입을 통해 이들을 화폐경제에 편입시키려는 노력도 집요하게 전개되었다.³⁰⁾ 생활의 거의 모든 면에서 급격한 변화를 강요받은 변인이 일으킨 대규모 반일 봉기인 霧社事件(1930년) 이후에도 변지의 보통행정구역으로의 전환이라는 커다란 추세는 큰 틀에서의 변화 없이 더욱 완성도를 높여 갔다.³¹⁾

26) 近藤正己, 앞의 논문, 36면.

27) 大江志乃夫, 「植民地戦争と總督府の成立」, 若林正丈 等, 『(岩波講座)近代日本と植民地』(第2卷: 帝國統治の構造), 岩波書店, 1992, 4면 및 10면은 “대만의 식민지화는 청일전쟁과는 별도의 또 하나의 전쟁”이었다고 규정하면서, “청일전쟁의 (일본군) 전몰자 총수는 8,395명인데 반해, 1895~1915년 사이에 전개된 대만 식민지전쟁을 통해 전몰자 총수는 9,592명”이었고, “전몰자의 단순 비교만으로도 대만 식민지전쟁은 청일전쟁 이상의 또 하나의 전쟁이었다는 사실”이 증명된다고 보았다. ‘이번사업’ 직후인 1918년 총독부 理蕃課長이었던 예구치 료사부로(江口良三郎) 역시 臺灣總督府 警察本署, 『理蕃誌稿』(第1・2編), 1918의 「跋」에서 “(討蕃의 시작인 1903년부터-필자) 지난 15년은 鐵血의 歴史였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28) 총기 제출과 함께 蕃社 內政에 대한 보고가 귀순 조건이 되고 있었다(小島麗逸, 앞의 논문, 56면).

29) 近藤正己, 앞의 논문, 46~49면.

30) 小島麗逸, 앞의 논문, 75~76면.

31) 이러한 치번 단계의 이번정책에 관하여 야나이하라 다다오(矢内原忠雄)는 “현재 高山蕃을 下山시키는 정책으로 시작된 번계의 임야 이용 또한, 정부의 强權에 의한 자본의 본원적 축적을 돕는 것이다.”라고 보면서도 실제로 “대만에서는 다른 나라 식민지의 역사에 보이는 것과 같은 극단적인

Ⅲ. 隘勇에서 警手로: 準警察人力의 창설과 운용

통치 초기의 무번 단계에는 서부 평원에서 전개된 무장 항일의 진압이 완료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총독부 입장에서는 번지에 대한 적극적 조치가 쉽지 않았던 반면, 자원 확보의 필요에 쫓겨 번지와 증첩한 산지에서 생산되는 樟腦의 채취·가공은 계속되어야 했기 때문에 장뇌 업자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는 필요했다. 그 결과 1874년 개산무번 실시 이래 시행되었던 隘勇 制度를 계승하여, 장뇌 생산지 부근에 애용을 배치하고 번인 경계에 나섰다. 예컨대 1890년대 대만 중부의 望族으로 장뇌 생산과 수출로 거부를 축적한 무봉霧峰 林家の 일원인 林紹堂에게 隘丁의 편성을 허가했다. 임소당에게 약 400명의 애정 편성을 허가하고 매달 약 2,000엔의 보조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애정에 제공하는 무기·탄약의 관리는 관할 기관인 臺中廳이 통제하는 방식이었다.³²⁾ 또 新竹이나 宜蘭에서는 장뇌 생산의 증가에 따라 蕃害가 심각해진 지역에 대한 대책으로 警丁을 배치하기도 했다. 처음엔 주로 한인을 고용했으나 점차 번인을 고용하기도 했다. 1900년 宜蘭廳은 16~22세의 번인 장정을 경정으로 고용했다.³³⁾

1899년 6월 장뇌 전매의 단행과 함께 설치된 樟腦局에도 장정을 배치하여 번해 방지에 나섰는데, 예컨대 동년 7월 羅東樟腦局은 청말 군역에 종사하던 장정을 叭哩沙의 樟腦局試驗所 보호에 활용하면서 이를 ‘樟腦局 壯丁’이라 불렀다(총 80명).³⁴⁾ 이밖에도 총독부는 장뇌 업자가 비용 부담을 조건으로 애용의 배치를 신청하면 이를 인가하는 請願隘勇 제도를 1900년대 초까지 실시하기도 했다.³⁵⁾ 요컨대 무번 단계에

원주민 토지 몰수, 공유지의 강제적 분할 등은 행해지지 않았다. 토지임야에 관한 정부의 조치는 용의주도한 계획과 신중한 고려를 통해 **문명적으로 행해졌다**(강조는 필자).”(矢内原忠雄, 『帝國主義下の臺灣』, 岩波書店, 1929, 32면)라고 평가한 반면, 小島麗逸, 앞의 논문, 48~49면 및 82면은 “이번정책의 실패는 아나이하라가 생각하는 만큼 **‘문명적’이지 않았고**,” 오히려 “山地 資本主義化를 위한 **하나의 전쟁**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다.

32) 문명기, 「國運과 家運-霧峰 林家の 성쇠를 통해 본 국가권력의 교체와 지역엘리트의 운명」, 『중국 근현대사연구』 69, 중국근현대사학회, 2016, 15~16면.

33) 石丸雅邦, 앞의 논문, 2~16면.

34) 鄭安晞, 앞의 논문, 87면.

35) 「請願隘勇의廢止」, 『臺灣日日新報』 1904년 3월 13일(제3판), 鄭安晞, 앞의 논문. 88면에서 재인용.

는 지역의 사정에 따라 애용, 애정, 경정, 장뇌국장정, 청원애용 등이 혼용되어 용어조차 통일되지 않았고 운영 주체도 제각각인 상황이었다.

이에 총독부는 1900년 3월 관내의 경정과 장뇌국 장정을 애용으로 개칭하는 한편, 관의 보조를 받거나 스스로 경비를 충당하는 民隘를 隘丁, 관이 직접 배치하고 운영하는 官隘를 애용隘勇으로 구별하기 시작했다.³⁶⁾ 아울러 애용 근무에 일률적인 규정이 없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자, 근무·상벌·휴가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통일을 기하기 시작하고³⁷⁾ 애용에 대한 감독을 위하여 애용 10명당 1명의 비율로 순사를 파견하여 애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나갔다.³⁸⁾

다만 이렇게 民隘와 官隘가 혼재하는 상황에 변화가 생기는 것이 전술한 남장사건 발생 이듬해인 1903년이다. 즉 보조금이나 장뇌 업자의 사비로 운영되던 민애를 없애고 모두 관애, 즉 애용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애용에 대한 관리·감독 주체를 경찰 계통으로 일원화했다.³⁹⁾ 관리 주체를 식산 계통에서 경찰 계통으로 통일하면서, 애용은 채용, 신분, 보수 면에서 제도화되어 갔다. 1904년 제정된 〈隘勇傭使規程〉에 따르면⁴⁰⁾ 17세 이상 45세 이하로 신체 강건하여 근로를 감당할 수 있으며 정신과 청력이 온전하고 목소리가 크고 맑은 자로 채용 조건이 규정되었다. 보수도 월 7~15 엔 사이로 하되 등급과 연차에 따른 차등을 두도록 했다. 수색이나 토벌 등에 참여할 때는 일정한 수당이 지급되었고 애용이 傭員 신분임이 규정되었다.⁴¹⁾ 휴가와 상벌에 관한 규정도 두어 관리·감독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이렇게 애용의 제도화가 진행되는 한편 장뇌 생산과 개간의 진전에 따른 변해의

36) 李文良 著, 北村嘉惠 譯, 앞의 논문, 171면.

37) 이때 제정된 것이 〈隘勇傭使規程〉(1900년 4월)이다(臺灣總督府 警察本署, 『理蕃誌稿』(第1・2編), 152면).

38) 「封禁蕃界」, 『臺灣日日新報』 1900년 12월 23일(제5판)에 따르면, “大料炭에 경부 1명, 순사 10명, 애정 100명, 馬武督에 경부 1명, 순사 5명, 애정 50명, 內灣에 경부 1명, 순사 5명, 경정 50명, 哇哇巴에 경부 1명, 순사 5명, 애정 50명, 景尾에 경부 1명, 순사 5명, 애정 50명 등”을 배치하고 있다.

39) 石丸雅邦, 앞의 논문, 2~15면.

40) 臺灣總督府 警察本署, 『理蕃誌稿』(第1・2編), 352~354면.

41) 1905년에는 애용의 신분을 雇員으로 변경하고, 같은 해 11월에는 번인 수색과 토벌에 참여하는 애용의 수당을 하루 15전에서 20전으로 인상했다(臺灣總督府 警察本署, 『理蕃誌稿』(第1・2編), 377면; 424면).

지속적인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애용의 규모는 꾸준히 늘어났다. 예컨대 1901년까지 1,000명 안팎이던 애용의 규모는 1902년 2,417명, 1904년 3,156명, 1906년 4,406명을 거쳐 전술한 ‘이번사업’이 본격화되는 1910년 5,502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이번사업’이 완료된 1914년에는 3,622명으로 감소하고 이후 3,000명 남짓의 규모를 유지했다.⁴²⁾ 다만 대부분 本島人, 그중에서도 漢人을 고용하던 애용 제도에 1912년부터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다. 內地人 애용의 채용이 시작된 것이다.⁴³⁾

‘이번사업’으로 본격적인 토번 단계에 들어서면서 군사 작전 경험을 갖춘 내지인을 채용하기 시작했는데,⁴⁴⁾ 이들 내지인 애용은 러일전쟁 이후의 불경기로 내지에서 적절한 직업을 찾지 못한 하급 군인 제대자가 많았다. 특히 하사관 경력을 보유한 자가 적지 않아서 이들의 작전 능력이 일반 순사에 뒤지지 않는다고 평가되기도 했다.⁴⁵⁾

이들 내지인 애용의 경력과 능력에 비추어 본도인 애용과 같은 신분, 그리고 별 차이 없는 보수는 내지인 애용의 불만을 사게 되고, 그 결과 1913년에는 내지인 애용을 警手로 개칭하고 보수와 직급 면에서 본도인 애용과 일정한 차이를 둔 〈警手規程〉이 제정·실시되었다. 경수는 “번지의 경비·토벌·수색 등의 업무에 종사”하되 본도인 애용의 최고 직급인 隘勇 伍長の ‘상급’임이 명확히 규정되었고(2조), 급여 역시 월급 10~20엔에 매달 5엔의 수당을 지급하며, 토벌·수색에 참여할 때는 매일 여비로 30~50전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었다(3~5조).⁴⁶⁾ 전술한 애용의 처우와는 분명한 차이가 드러남을 확인할 수 있다.⁴⁷⁾

42) 『臺灣總督府統計書』(각년판)(이하 『統計書』로 줄임).

43) 물론 1912년 이전에도 내지인을 채용하기도 했지만 “一時의 異例에 불과했다.”(鈴木作太郎, 『臺灣の蕃族研究-霧社事件』(南方資料叢書1), 靑史社, 1977(1932년 간행본의 복제), 302면).

44) 臺灣總督府 警務局, 『理蕃誌稿』(第3編), 1921, 281~282면.

45) 石丸雅邦, 앞의 논문, 2-17면; 鄭安晞, 앞의 논문, 130면.

46) 〈警手規程〉, 『臺灣總督府報』 228, 1913년 5월 2일.

47) 보수나 처우 외에도 경수로 경력을 쌓는 것이 乙種巡查가 되는 채널로 인식되면서 경수를 지원하는 내지인이 많아지기도 했다(石丸雅邦, 앞의 논문, 2-19면). 실제로 1907년 10월 民政長官은 번지 근무 1년 이상이면서 실적이 우수한 애용에 대하여 〈巡查補採用規則〉의 단서 조항(“巡查補는 체격 및 학술 시험을 거쳐야 한다. 단 특수 기능자는 학술 시험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을 적용할 수 있다고 廳長에 통지한 바 있는데, 이 ‘특수 기능자’에 애용과 경수도 포함된다(鄭安晞, 앞의 논문, 130면).

1912년 내지인 애용은 전체 애용 3,990명 중 300명(전체 애용의 7.5%)이었으나, 1913년 575명(20.6%), 1914년 687명(19.0%), 1915년 682명(22.9%), 1916년 667명(22.5%)으로 채용 규모가 점점 늘어났다. ‘이번사업’ 종료와 함께 줄어들어 1917년 487명(16.1%), 1918년 346명(10.8%), 1919년 243명(7.8%) 등이었다.⁴⁸⁾ 이렇게 본도인 애용과 내지인 경수가 양립하는 상황은 1920년에 다시 변화한다.

1920년 관제 개정 당시 순사(내지인)와 순사보(대만인)의 구별을 없애고 순사로 통일한 조치와 같은 맥락에서, 즉 애용과 경수라는 별개의 호칭과 차별적 처우가 준경찰인력의 사기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하여, 경수(내지인)와 애용(대만인)의 구별을 없애고 일률적으로 경수로 통일했다. 그 결과 1920년 〈警手規則〉을 제정하면서 기존의 애용 관련 규정은 모두 폐지했다. 이로써 대만의 준경찰인력은 경수로 통일되었다. 다만 구체적 규정을 보면 본도인 경수와 내지인 경수의 차이가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었다. 경수를 주지사 또는 청장이 雇員으로 임면한다는 규정(2조)과 경수에게 15~50엔 사이의 월급을 지급한다는 규정(6조)은 동일하게 적용되었지만, ‘內地籍’ 경수에게는 등급과 근무 지역에 따라 매달 3~8엔의 수당이 지급된 반면 ‘臺灣籍’ 경수에게는 등급과 근무 지역에 따라 1~2엔의 수당만 지급되었다(7조).⁴⁹⁾

어쨌든 1915년 이후 治蕃 단계에 들어서 경수의 임무가 “번지의 경비·토벌·수색 등의 업무”(〈警手規程〉, 1907년)에서 번지·번인 통치를 담당하는 “순사의 직무를 보좌”(〈警手規則〉, 1920년)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경찰 보조 업무에서 경찰 보조와 번지 행정 보조까지 경수가 담당하게 된다. 이에 따라 기본적으로 한인 위주였던 경수의 구성은 점차 번인 경수와 내지인 경수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게 된다.⁵⁰⁾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1920년대 경수의 족군별 구성은 파악하기 곤란하지만, 1932년부터 1940년까지는 살펴볼 수 있다.

48) 『統計書』(각년판).

49) 鄭安晞, 앞의 논문, 132~133면.

50) 애용이나 경수의 직무, 신분, 처우 등에 관해서는 문명기, 「일제하 대만 경찰력의 재검토-번지 경찰력과 평지 경찰력의 통합적 이해」, 『동양사학연구』 159, 동양사학회, 2022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다.

〈표 1〉 警手の 민족별 구성⁵¹⁾

연도	내지인(%)	한인(%)	번인(%)	합계
1932	504(18)	1,240(45)	1,005(37)	2,749
1933	834(29)	1,073(37)	1,013(35)	2,920
1934	806(28)	1,090(38)	992(34)	2,888
1935	757(27)	1,047(37)	1,009(36)	2,813
1936	709(26)	999(37)	1,026(38)	2,734
평균(%)	722(26)	1,090(39)	1,009(36)	2,821
1937	368(14)	1,079(42)	1,113(43)	2,560
1938	222(9)	1,135(44)	1,227(48)	2,584
1939	165(6)	1,063(42)	1,333(52)	2,561
1940	92(4)	990(40)	1,422(57)	2,504
평균(%)	212(8)	1,067(42)	1,274(50)	2,553
전년 평균(%)	495(18)	1,080(40)	1,127(42)	2,702

1910년대까지의 애용·경수의 민족별 구성과 비교하여 가장 두드러진 변화 중 하나는 번인 경수의 증가이다. 여기에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치변 단계의 번지 통치는 번인과의 직접적 접촉이 증가함에 따라 번인 사회의 사정에 밝은 번인 경수의 수요가 늘었기 때문일 것이다.⁵²⁾ 아울러 내지인 경수 역시 기본적인 경계·경찰 업무 외에도 번인에 대한 일본어 교육, 정착 농경의 지도 등의 필요에 따라 일정한 규모를 유지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내지인 경수는 대체로 1936년까지는 평균 26%의 비율을 유지하다가 1937~40년에는 평균 8%로 급감했다. 반면에 한인 경수는 39%에서 42%, 번인 경수는 36%에서 50%로 증가했다. 이는 내지인

51) 1932년은 『臺灣の警察』, 1932, 136면, 1933년은 『臺灣總督府警察統計書』(1933년판)(이하 『警察統計書』로 줄임), 71면, 1935년은 『警察統計書』(1935년판), 74면, 1936년은 『警察統計書』(1936년판), 74면, 1937년은 『警察統計書』(1937년판), 63면, 1938년은 『警察統計書』(1938년판), 63면, 1939년은 『警察統計書』(1939년판), 21면, 1940년은 『警察統計書』(1940년판), 9면에 따랐다.

52) 내지인 경찰의 번어 습득 상황을 보면 번인 경수 비중이 높았던 것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던 것 같다. “造語가 교묘하여 어떤 복잡한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어학 능력의 소유자인 甲種과 그렇지 않은 乙種 합격증서 보유자를 보면, 번지 근무 순사의 번어 합격자는 갑종 2.5%, 을종 31.0%였다(近藤正己, 앞의 논문, 42면).

경수 거의 전부가 군인 출신이거나 징병 대상이기 때문에 중일전쟁 발발 이후 내지인 남성에 대한 군사 동원이 본격화된 것과 연관된 듯하다.⁵³⁾

이상의 논의를 간략히 정리하면, 처음에는 청대 말기의 애용 제도를 기본적으로 계승하여 창설된 애용은 1903년부터 제도화되면서 준경찰인력으로서 기능하기 시작했고, 치번 단계에 들어서면서 기존의 경찰 보조에 더하여 (번지) 행정 보조까지를 겸하는 존재로 변화했다. 번지는 1945년까지 일반 법률과 행정이 적용되지 않는 특별행정구역이었고, 따라서 평지의 일반행정에 해당하는 업무까지 번지에 배치된 정규 경찰인력과 준경찰인력이 떠맡아야 했음을 상기하면, 준경찰인력의 규모가 꽤 큰 규모로 유지된 이유를 납득할 수 있다. 1901년부터 1938년까지 준경찰인력의 정규 경찰인력에 대한 비율을 계산해 보면, 단순 계산했을 경우 준경찰인력이 정규 경찰인력의 평균 47.6%에 달했다. 준경찰인력 2명이 경찰인력 1인의 역량에 해당한다고 간주하여 계산하더라도 준경찰인력이 정규 경찰인력의 23.8%, 대체로 ¼에 달하는 규모였다.⁵⁴⁾ 일제하 대만의 경찰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 준경찰인력의 존재를 무시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IV. 隘寮에서 駐在所로: 蕃地 경찰관서의 설치와 변화

전절에서 살펴본 준경찰인력이 주로 번계나 번지 내에 배치되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규모의 경찰관서가 번지에 배치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통치 초기부터 말기에 걸쳐 번지에 배치된 경찰관서는 애료, 隘勇監督所(이하 감독소로 줄임), 隘勇監督分遣所(이하 분견소로 줄임), 警戒所, 駐在所 등이었다. 우선 초기의 무번 단계에는 번인 방비를 위해 번계의 적당한 山谷에 좁은 띠 모양의 도로인 隘路를

53) 『警察統計書』의 〈警察職員ノ兵科別現在員(階級別)〉이라는 항목을 통해 1937년 이전과 1937년을 비교해보면, 경수 중에서 兵科를 가진 자, 즉 군대 경험자가 1934년 457명, 1935년 431명, 1936년 424명으로 400명대를 유지하다가 1937년에는 132명으로 급감한다. 이런 현상은 내지인이 대부분인 甲種巡査에게도 똑같이 발생하여, 1936년 병과를 가진 자가 2,749명이었으나 1937년에는 1,953명으로 급감하고 있다.

54) 이에 관해서는 문명기, 앞의 2022 논문이 상세히 검토하고 있다.

만들고, 이 애로의 요충지에 초소 겸 숙소인 隘寮를 지어 경계 임무를 수행했다. 애로와 애로를 합하여 隘勇線이라 했다. 무번 단계에는 대체로 애용선 3~4정(1町≒110m)마다 애로를 설치하고, 지세와 번지 상황에 따라 대체로 1리(≒4km)에 12~13개의 애로를 설치했으며, 애로마다 애용 2~4명을 배치했다.⁵⁵⁾

전술했듯이 애용이 경찰 계통에 귀속하고 본격적인 번인 공략에 나선 토번 단계에 번지 경찰관서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1903년에는 애용 및 애용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감독소의 설치가 규정되어 총 142개의 감독소가 설치되었고,⁵⁶⁾ 1904년부터는 감독소 밑에 분건소, 분건소 밑에 애로를 설치하여 경찰관서로서의 위계와 체계를 갖추기 시작했다. 1907년 4월에 제정된 〈蕃地警察職務規程〉(훈령 제54호)에 따르면 廳長은 필요한 곳에 애용선이나 蕃務官吏駐在所를 설치할 수 있었고(제2조), 애용선에는 감독소, 분건소 및 애로를 설치하게 되었다.⁵⁷⁾ 감독소에는 경부, 경부보, 순사, 순사보와 애용을, 분건소에는 순사, 순사보와 애용을, 애로에는 애용을 각각 배치하도록 규정되었다(제3조).⁵⁸⁾ 즉 애용선에는 감독소-분건소-애로라는 위계를 가지는 경찰관서가 조직되었다. 이에 따라 1907년부터는 애로 4~5개마다 분건소를 설치하고 책임자로서 순사나 순사보를 배치했으며, 분건소 4~5개마다 감독소를 설치하고 책임자로서 경부나 경부보를 배치하게 되었다.⁵⁹⁾

애용선의 전진과 ‘이번사업’의 진전에 따라 귀순 요구에 응하여 총독부의 통치를 수용한 번인 부락에는 “蕃人을 綏撫하고 化育하는 기관으로서 주재소를 설치하여 授産, 교역, 의료, 교육 등을” 행하도록 했고, 총독부의 통제가 충분치 못한 지역에는

55) 持地六三郎, 『臺灣殖民政策』, 富山房, 1912, 383~386면.

56) 『統計書』(1903년판).

57) 臺灣總督府 警察本署, 『理蕃誌稿』(第1・2編), 521면. 이 〈蕃地警察職務規程〉은 번지 경찰관서 설치의 법적 근거로서 기능했는데, 1907년 이전에는 1896년 제정된 〈警察署分屬勤務規程〉에 따라 파출소를 설치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1899년부터 주로 남부 번지의 주요 蕃社에 蕃地警察官吏派出所를 설립했다. 이것이 번지 경찰관서 설치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1905년에는 대만 전체 20개 廳 중에서 13개 청에 52개의 번지경찰관리파출소를 설치했다(林一宏・王惠君, 앞의 논문, 104면). 따라서 1907년 이전의 파출소에는 번지에 설치된 파출소와 평지에 설치된 파출소가 섞여 있어서 파출소= 평지 경찰관서라는 등식이 반드시 성립하지는 않는다.

58) 臺灣總督府 警察本署, 『理蕃誌稿』(第1・2編), 521면.

59) 持地六三郎, 앞의 책, 383~386면. 애로, 분건소, 감독소가 설치된 1903~14년에 감독소는 연평균 48개, 분건소는 연평균 321개, 애로는 연평균 1,117개가 설치되어 있었다.

警戒所를 두었다. 즉 “경계소는 경계와 방어의 임무를 가지는 기관으로, 頑迷不逞하여 반항의 우려가 있는 蕃社에 대해 경계와 위압을 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되었다.⁶⁰⁾ 감독소는 1916년부터 경계소로 개칭되었으나 혼용되기도 했다. 대체로 번인에 대한 ‘토벌’이 완료된 1915년 이래 약 10년이 지나 번지 지배가 안정화되었다고 판단된 1926년부터 경계소와 분견소를 폐지하고 주재소로 일원화되었다.⁶¹⁾ 요컨대 통치 초기에는 식산 계통이 관할하는 애료만 존재하다가 경찰 계통이 번지를 통할하기 시작한 1903년부터 애료 감독을 위한 감독소가 설치되면서 번지 경찰관서에 위계를 갖추기 시작했고, 토번이 완료된 1915년부터는 감독소-분견소가 존치되고 애료가 철폐됨과 동시에 주재소와 경계소가 공존하게 되었으며, 번지 지배가 안정화되었다고 판단된 1926년부터는 감독소-분견소와 경계소를 철폐하고 주재소만 설치되었다.⁶²⁾ 이들 번지 경찰관서의 변화는 아래의 표에 잘 반영되어 있다.

〈표 2〉 平地와 蕃地の 경찰관서 규모, 1903~1940⁶³⁾

연도	평지	번지				
	파출소	주재소	감독소(경계소)	분견소	애료	합계
1903	981	0	142	0	698	840
1904	961	0	33	169	855	1,057
1905	978	0	29	278	1,242	1,547
1906	983	0	36	339	1,572	1,947
1907	958	40	38	383	1,498	1,959
1908	947	72	41	411	1,409	1,933

60) 따라서 경계소는 완비된 방어 및 공격 설비를 갖추게 되어 있으며, 경계소 정원은 경부 또는 경부보 1명에 10~30명의 순사부장, 순사, 경수를 두게 되어있었다. 분견소는 경계소 휘하에 설치하는 경찰관서로 설비나 구조는 경계소에 준하며 정원은 3~10명의 순사, 경수를 두게 되어 있었다(臺灣總督府 警察官及司獄官練習所 編纂, 『臺灣地方警察實務要論』, 8~9면).

61) 문명기, 「일제하 대만·조선 공의제도에 대한 비교사적 접근-제도의적 측면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총』 42, 국민대 한국학연구소, 2014, 351~352면.

62) 1907년부터 설치되기 시작한 주재소의 정식 명칭은 蕃務官吏駐在所였는데, 1915년에는 토번의 완료와 함께 토번을 총괄하던 蕃務本署를 폐지하고 평지와 번지의 경찰 업무를 다시 警察本署가 통괄하게 되면서 주재소 명칭도 警察官吏駐在所로 변경되었다(林一宏·王惠君, 앞의 논문, 105면).

63) 『統計書』(각년판).

1909	948	126	46	440	1,570	2,182
1910	952	155	45	432	1,250	1,882
1911	952	175	46	439	1,171	1,831
1912	956	196	44	427	756	1,423
1913	958	199	54	454	759	1,466
1914	963	187	16	75	619	897
1915	973	207	80	419	0	706
1916	931	214	68	521	0	803
1917	933	243	63	526	0	832
1918	928	270	56	498	0	824
1919	929	311	49	439	0	799
1920	969	343	46	399	0	788
1921	976	340	67	275	0	682
1922	978	412	51	173	0	636
1923	977	414	61	147	0	622
1924	974	452	49	115	0	616
1925	957	436	40	105	0	581
1926	968	576	0	0	0	576
1927	964	567	0	0	0	567
1928	968	542	0	0	0	542
1929	975	535	0	0	0	535
1930	980	516	0	0	0	516
1931	983	527	0	0	0	527
1932	995	523	0	0	0	523
1933	1,000	530	0	0	0	530
1934	1,009	530	0	0	0	530
1935	1,010	525	0	0	0	525
1936	1,018	520	0	0	0	520
1937	1,065	502	0	0	0	502
1938	1,023	488	0	0	0	488
1939	1,020	477	0	0	0	477
1940	1,019	479	0	0	0	479

통치 초기 번지 경찰관서 역할을 담당한 애로는 본격적인 토변이 개시된 1910년부터 규모가 축소되다가 토변 완료 이듬해인 1915년에 철폐된 반면, 對蕃 거점 역할을 한 감독소와 분건소는 대략 1920년 전후까지 팽창하다가 1921년부터 축소되어 1926년부터는 없어졌다. 반면 감독소와 분건소의 대번 거점 역할보다는 안정적인 번지·번인 통치에 중점을 둔 주재소는 1910년부터 1930년대 말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요컨대 주재소는 평지의 파출소와 함께 경찰 업무와 다양한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대표적인 기층 경찰관서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번지 경찰관서가 규모나 위계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하여 평지 경찰관서와 직접적인 비교가 곤란하기는 하지만, 평지=파출소, 번지=주재소로 단순화된 1926년부터 1940년까지만 비교해보면, 주재소는 파출소의 약 52%에 달했다. 번인 인구가 대만 전체 인구의 3% 남짓에 불과했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대단히 밀도 높은 경찰관서 배치라고 할 수 있다.⁶⁴⁾ 면적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1931~1940년 평지의 면적 평균은 19,674km², 파출소 평균 개수는 1,014개로 해당 기간 연평균 파출소 1곳당 담당 면적이 19.40km²였고, 같은 기간 번지의 평균 면적은 16,219km², 주재소 평균 개수는 510개로, 해당 기간 연평균 주재소 1곳당 담당 면적은 31.83km²였다. 번인 부락이 대부분 해발 600~1,800m의 산지였음을 고려하면 번지 경찰관서는 상당히 밀도 있게 배치되었음을 알 수 있다.⁶⁵⁾ 그렇다면 이상에서 살펴본 준경찰인력 및 경찰관서의 제도화·조직화와 양적 확대는 번지 통치에 어떤 결과를 초래했을까? 번지 통치의 양상이나 실태는 여러 각도에서 살펴볼 수 있겠지만, 다음 절에서는 번지의 치안 및 사적 폭력의 통제라는 경찰조직 본연의 목표와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V. 銃器 回收와 島內 殺傷의 추이: 蕃地 경찰조직 수립의 효과

대만 번인에게 馘首라는 관습이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고, 또 청대 국가권력은

64) 대만 총인구에 대한 번인 인구의 비율은 臺灣省行政長官公署統計室 編, 『臺灣省五十一年來統計提要』, 1946, 76~77; 94~95면에 근거했다.

65) 『警察統計書』(각년판). 참고로 1920~1938년 조선의 경찰기관 1곳당 담당 면적은 평균 74.84km²였다(문명기, 앞의 2014 논문, 352~353면).

변인의 이러한 관습을 활용하여 격리 원칙에 기반한 族群政治(ethnic politics)를 전개한 바 있다.⁶⁶⁾ 이러한 격리와 봉쇄 위주의 변인 대책을 철폐하고 동화주의를 기본원리로 삼아 변지의 개발과 변인의 동화에 나서기 시작한 것이 1874년 대만사건 이후 沈葆楨이나 劉銘傳에 의한 開山撫番이었다는 점도 이미 언급했다. 사실 대만총독부의 이번정책은 1870년대부터 시작된 동화주의적 변인 정책의 연장선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른 점은 근대적 군사력·경찰력 등의 폭력장치와 풍부한 재정에 뒷받침된, 이전 시대보다 훨씬 조직적이고 강도 높은 동화주의를 추구했다는 것이다.⁶⁷⁾ 그렇다면 대만총독부가 이번정책을 통해 거둔 구체적인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변인이 청말이나 식민지시대에 전개한 국가권력의 공세에 대해 저항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꼭수 관습과 함께) 변인의 총기 소지가 있었다. 청대부터 (일종의 브로커인) 通事를 매개로 한 무역을 통해 획득한 총기와 탄약 등의 각종 무기는⁶⁸⁾ 험준한 산지가 제공하는 지리적 이점과 더불어 변인 저항력의 핵심을 이루고 있었다.⁶⁹⁾ 이 점을 간파한 총독부는 초기부터 변인 무기의 회수에 노력했다. 군사적 공격에 못이겨 귀순한 변인들에게 총독부가 요구한 것은 무기와 번사대장의 제출이었다. 즉 무기의 자진 제출은 변인에 있어서 총독부의 통치를 수용하는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 중 하나였고, 총기의 압수는 총독부 입장에서 불가결한 절차였다.⁷⁰⁾ 아래 표는 총독부가 변인에게서 압수하거나 제출받은 무기의 수치를 정리한 것이다.

66) 문명기, 앞의 2016 논문, 4~6면.

67) 문명기, 앞의 2022 발표문, 4면 및 37면.

68) 이노 가노리(伊能嘉矩)나 모리 우시노스케(森丑之助) 등은 변인의 총기 소유가 대체로 1750~1760년대에 시작되었고 특히 1880년대 劉銘傳의 開山撫番이 개시되자 이에 대항하면서 변인의 총기 소유가 급증했다고 본다(山田仁史, 「臺灣原住民族の首狩-人類史におけるその位置」, 太魯閣族抗日戰爭史學術研討會(第八回臺日原住民族研究論壇), 2015 발표문, 3~4면).

69) 때문에 蕃務總長 오쓰 린페이(大津麟平)는 무기 몰수를 ‘이번사업의 주요 목표 중 하나로 설정했다(鈴木作太郎, 앞의 책, 346~347면).

70) 다만 변인이 수렵에 사용할 총기는 주재소 등 경찰관서가 관리하면서 대여하기도 했다(鈴木作太郎, 앞의 책, 330면).

〈표 3〉 번인에게서 압수하거나 제출받은 총기·탄약류⁷¹⁾

연도	총기(挺)	총신(個)	탄약(發)	화약(瓦=g)
1895~1921 누계	26,305	1,776	39,573	78,353
1895~1921 평균	974	66	1,466	2,902
1922	102	7	0	0
1923	135	2	500	0
1924	121	11	366	110
1925	71	37	41	30
1926	1,449	210	6,074	2,370
1927	93	0	240	0
1928	50	6	0	0
1929	178	7	29	0
1930	496	0	3	0
1931	112	0	1,637	719
1932	239	33	3,394	3,904
1933	422	27	1,041	182
1934	149	19	0	0
1935	569	33	161	185
1936	819	167	1,727	43,510
1937	818	185	0	0
1938	3,253	1,432	64	0
1939	857	179	0	0
1940	1,361	127	0	0

71) 臺灣總督府 警務局 編, 『警察統計書』(1932년판), 165면 및 『警察統計書』(1940년판), 86~87면. 『統計書』는 1916년부터 1929년까지 14년에 걸쳐 번인에게서 압수한 총기, 탄약, 도검 및 창 등의 수치를 제공하고 있지만, 1915년 이전 및 1929년 이후에는 제공하고 있지 않다. 또 『統計書』에 제시된 수치와 『警察統計書』에 제시된 수치에 다소 차이가 있다. 예컨대 1925년의 총기 압수에 관하여 『統計書』는 44정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警察統計書』는 71정이라고 기록하는 등 대체로 『警察統計書』의 수치가 큰 편이다. 『警察統計書』가 압수하거나 제출받은 수치를 기록한 반면 『統計書』가 압수한 수치만 기록한 차이일지도 모르겠다.

1922~1940 누계	11,294	2,482	15,277	51,010
1922~1940 평균	594	131	804	2,685
전체 누계	37,599	4,258	54,850	129,363
전체 평균	817	93	1,192	2,812

표에 따르면 무번 및 토번 단계에 더하여 치번 단계의 일부를 포함하는 1895년부터 1921년 사이의 연평균 총기 회수는 약 974정이고⁷²⁾ 대부분의 치번 단계를 포함하는 1922년부터 1940년 사이의 연평균 총기 회수는 594정이었다. 무번 단계에는 번인에 강제력을 행사하기 어려웠고 따라서 무번 단계에 총기 회수가 일어나기 힘들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토번 단계에 총기 회수가 집중적으로 일어난 결과일 것으로 추측된다.⁷³⁾ 총신(銃身)이나 탄약, 화약 등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관찰되고 있음은 위의 표가 잘 보여주고 있다. 대략 45년에 걸쳐 회수된 총기는 약 38,000정이다. 식민지시대 번인 인구는 연평균 132,112명이었다.⁷⁴⁾ 이 중 남성이 절반이고, 총기를 다룰 개연성이 있는 성인 남성이 남성 인구의 절반이라고 간주하면, 약 33,000명의 성인 남성이 38,000정의 총기를 보유하다가 총독부에 제출하거나 압수당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⁷⁵⁾ 번인의 ‘저항력’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면서

72) 1915년에만 약 14,000정이 회수되었다고 한다(近藤正己, 앞의 논문, 37면).

73) 다만 臺灣總督府 警務局, 『理蕃誌稿』(第5編), 1938, 66면 및 102면에 따르면 1921년에도 경수나 장뇌 관련 노동자인 腦丁과 번인 사이에 총기 밀매가 소규모나마 일어나고 있었다. 1926년은 다른 연도에 비해 유독 총기 회수 실적이 두드러지는데, 이에 대하여 臺灣總督府 警務局, 『理蕃誌稿』(第5編), 1938, 1000~1003면은 1926년 번지, 특히 북부 지역 번지에 발생한 대기근을 이용하여, 번인이 보유한 총기를 일정한 ‘代價金’을 지불하여 회수하고, 지불한 대상금을 대기근으로 부족해진 식량 구입에 쓰도록 유도하는 전략을 구사함으로써 ‘대성공’을 거두었음을 보고하고 있다. 그 결과 新竹州, 臺北州, 臺中州에서만 총기 1,319정을 회수할 수 있었다고 한다. 1938년의 두드러진 실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1937년 중일전쟁 발발을 계기로 원주민 사회에 대한 총기 회수가 대대적으로 진행된 결과로 판단된다.

74) 臺灣省行政長官公署統計室 編, 『臺灣省五十一年來統計提要』, 76~77; 94~95면.

75) 『統計書』에 제시된 蕃社現住戶口라는 항목은 번사, 호구, 남녀 인구 및 전체 인구 외에 ‘壯丁’의 숫자를 따로 제시하고 있다. 장정 규모는 대체로 3만 명 전후였다. 예컨대 1910년 번인 전체

동시에 대만총독부의 총기 회수가 집요하게 실행된 결과, 국가권력 이외의 사적 무장력을 거의 허용하지 않는 단계까지 도달했음을 짐작하게 한다.

번인이 보유한 사적 무장력의 제거는 번인에 의한 내지인과 한인에 대한 살상을 억제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한 것 같다. 대만총독부는 통치 초기부터 줄곧 번해의 규모를 통계로 제시해왔는데, 아래의 표는 『理蕃概要』, 『統計書』, 『警察統計書』 등이 제시하는 관련 통계 중 부상자(=傷)를 제외한 사망자(=死)의 수치를 추리고 무번, 토번, 치번(1), 치번(2) 단계로 나누어 정리한 것이다.

〈표 4〉 蕃害 사망자 추이, 1896~1940⁷⁶⁾

무번 단계 (1896~1902)		토번 단계 (1903~1915)		치번(1) 단계 ⁷⁷⁾ (1916~1930)		치번(2) 단계 (1931~1940)	
연도	사망자	연도	사망자	연도	사망자	연도	사망자
1896	63	1903	229	1916	100	1931	8
1897	151	1904	153	1917	136	1932	3
1898	557	1905	188	1918	41	1933	5
1899	531	1906	244	1919	59	1934	1
1900	525	1907	330	1920	222	1935	0
1901	510	1908	92	1921	126	1936	1
1902	311	1909	190	1922	48	1937	0
		1910	193	1923	5	1938	3
		1911	434	1924	11	1939	1
		1912	816	1925	7	1940	2
		1913	243	1926	12		
		1914	211	1927	25		

인구 122,106명에 대하여 번인 장정은 28,789명(『統計書』(1914년판), 40면), 1920년 번인 전체 인구 130,310명에 대하여 번인 장정은 30,442명(『統計書』(1920년판), 45면) 등이다. 필자의 추정과 대략 맞아떨어지는 수치이다.

76) 1896~1905년은 臺灣總督府 民政部 蕃務本署 編, 『理蕃概要』, 1913의 〈第七附表〉(면수 없음), 1906~1929년은 『統計書』(각년판), 1930~1940년은 『警察統計書』(1940년판), 88~89면에 각각 근거했다.

77) 1920년과 1921년에 번해 사망자가 돌출적으로 많은 것은 그해에 번인이 주재소를 습격하여 경찰

		1915	163	1928	10		
				1929	10		
				1930 ⁷⁸⁾	139		
합계	2,648	합계	3,486	합계	951	합계	24
총계							7,109
평균	378	평균	268	평균	63	평균	2
무변 · 토변 시기 평균			307	치변 시기 평균			39
전년 평균							158

표에 따르면 총독부가 수세적 방침을 취한 무변 단계 연평균 변해 사망자가 378명으로 최다였고, 군사 작전에 버금가는 공세를 취한 토변 단계 연평균 변해 사망자는 268명이었다. 이후 일상적 · 안정적인 번지 통치가 행해진 치변 단계 연평균 변해 사망자는 39명으로 현저히 감소했고, 특히 무사 사건 이후인 치변(2) 단계는 연평균 2명으로 변해에 의한 사망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수준까지 도달했다. 총기 회수의 지속적인 추진과 번지에서의 경찰 권력의 확립이 변해를 억제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건이 집중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이다(林一宏 · 王惠君, 앞의 논문, 105면). 鈴木作太郎, 앞의 책, 297면도 1919~1920년에 북부 번인 일부가 봉기하여 “진압이 사뭇 힘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 78) 1930년의 통계는 비교적 명백한 오류인 것 같다. 1930년의 무사사건으로 인한 민간인 사망자는 내지인 134명, 기모노를 입고 있어서 내지인으로 오인되어 살해된 본도인(한인) 2명으로 총 136명이다(石丸雅邦, 앞의 논문, 1~32면). 여기에 내지인 및 본도인 경찰 인력 사망자 59명을 더하면 총인원은 최소 195명이 되어야 한다(문명기, 「식민지시대 대만인과 조선인의 야스쿠니신사 합사」, 『중국근현대사연구』 76, 중국근현대사학회, 2017, 63면). 따라서 표에 제시된 1930년의 통계에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통계상의 오류는 1930년의 ‘번인 상호살상’ 통계에서도 반복되는데(각주 79 참조), 필자가 통계의 근거로 삼은 『警察統計書』는 경찰과 민간인을 합하여 139명이 사망한 것으로 기록하지만, 『統計書』(1930년판), 514면은 “소화5년(=1930년)의 사실은 조사를缺함.”이라고만 기록할 뿐, 통계 자체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제까지 보아온, 치밀하고 정확한 통계 능력을 자랑하는 대만총독부를 떠올리면 다소 의외의 오류이다. 필자는 이러한 ‘조사의 결여’나 ‘통계의 오류’는 다분히 의도된 것이라고 본다. 무사사건은, 사건 이전까지의 이번정책의 성과에 자신감을 보이던 대만총독부에 큰 충격을 준 사건이다. 따라서 1930년의 ‘부실한 통계’는 무사사건으로 대만총독부가 가지게 된 트라우마의 반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찰 결과는 애용선의 증가에 따라 변해 숫자가 감소하는 경향에 있었다는 기존 연구의 지적과도 부합한다.⁷⁹⁾

한편 번지에서의 경찰 권력의 확립은 변해만을 억제한 것이 아니라, 번인의 상호살상을 억제하는 데도 일정하게 역할을 했던 것 같다.

〈표 5〉 번인 상호살상, 1916~1940⁸⁰⁾

연도	死	傷	연도	死	傷
1916	48	72	1931	9	44
1917	47	67	1932	15	28
1918	13	53	1933	9	11
1919	48	20	1934	16	29
1920 ⁸¹⁾	90	52	1935	6	25
1921	42	39	1936	5	14
1922	61	37	1937	7	11
1923	24	34	1938	6	7
1924	17	31	1939	2	3
1925	19	63	1940	0	5
1926	25	43			
1927	12	30			
1928	5	50			

79) 林一宏·王惠君, 앞의 논문, 73면.

80) 1916~1929년은 『統計書』(각년판), 1930~1940년은 『警察統計書』(1940년판), 88~89면에 근거. 『警察統計書』(1940년판), 88~89면은 1895~1929년의 35년간 번인 상호살상에 관하여 사망(死) 1,160명, 부상(傷) 843명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는 사망자 연평균 33.14명, 부상자 연평균 24.09명에 해당한다. 다만 1930년의 번인 상호살상을 4명이라고 제시하면서 『統計書』(1930년판), 265면은 “쇼와 5년(1930년)의 사실은 조사를 결함.”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의심스럽다. 주지하듯이 1930년 무사사건 진압 과정에서 소위 미방번(味方蕃, 총독부 편에 선 번인)에 의한 보호번(保護蕃, 무사사건을 일으켰다가 총독부에 항복하여 총독부가 통제하던 번인)에 대한 대량 학살이 일어나 약 210명의 보호번이 사망한 사실을 고려하면(近藤正己, 앞의 논문, 53면) 『統計書』가 의도적으로 관련 통계를 누락했거나, 보호번 학살을 무사사건의 한 과정으로 간주하여 번인 상호살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81) 1920년에 비교적 많은 상호살상이 발생한 것은, 같은 해 1월에 발생한 사라마오 사건 당시 사라마

1929	9	50			
1930	4	24			
합계	464	665		75	177
평균	30.93	44.33		7.50	17.70

관련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1916년부터 1940년까지의 변인 상호살상 통계를 무사 사건이 발생한 1930년을 경계로 하여 두 시기로 나누어 관찰하면, 1916~1930년에는 연평균 약 30.93명의 변인 상호 살인이 발생한 데 반해 1931~1940년에는 연평균 약 7.50명의 변인 상호 살인이 발생하고 있다. 변인이 내부적으로 여러 집단으로 분열되어 있었고 상호 갈등과 폭력이 빈번하게 일어나곤 했다는 점은 여러 사례가 보여주지만,⁸²⁾ 치번 단계에 이르면 변지 경찰조직의 안정적인 변지 통제와 살상 무기의 회수, 나아가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 생업으로의 전환 등의 여러 변화는 변인 상호 간의 자의적 폭력 행사와 자력구제(自力救濟) 경향 역시 감소시키는 효과를 낳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역으로 내지인이나 한인에 의한 변인 살해는 어떠했을까. 『統計書』나 『警察統計書』 등은 변인에 의한 일본인이나 대만인 살상에 관해서는 꽤 충실히 기록하고 있지만, 총독부 군경이나 대만 한인에 의한 변인 살상에 관해서는 기록 자체가 다소 부실하다. 전쟁으로 묘사되는 ‘이변사업’이 전개된 1910~14년 사이에 군사 작전에 동반

오변과 적대 관계에 있던 霧社蕃의 사라마오변 공격을 변지 경찰이 묵인했기 때문에 다수의 살상이 발생했기 때문인 듯하다(石丸雅邦, 앞의 논문, 3-19면).

- 82) 1914년 11월, 花蓮港廳 太魯閣支廳 관내의 A社 변인 B가 C社 변인 D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주재소 경찰과 지청장이 가해자 B를 심문한 결과, B는 C社의 일족 E로부터 “중대한 치욕”을 당한 일이 있고, 이를 잊지 않은 B는 우연히 만난 C社의 E의 일족인 D를 살해하여 “복수를 실현”한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해 해당 지청은 가해자 일족이 현금 20엔과 보석으로 장식한 치마(珠裙) 여섯 벌을 준비하도록 하여 사죄 금품으로 피해자 일족에 지급하고 화해를 성립시켰다. 아울러 해당 지청은 “변인 간의 관습”임을 참작하여 화해의 성립과 가해자에 대한 훈제로 사건을 종결하고 있다(臺灣總督府 警務局, 『理蕃誌稿』(第4編), 1932, 6면). 변인 사회에서는 전통적으로 복수를 위한 살상은 당연한 권리로 인식하여 처벌의 대상이 아니었고, 복수의 대상 역시 가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親族이나 宗族까지 미치는 일도 있었다. 이러한 관행은 (두목이나 유력자의 개입을 통해) 보복을 제한하고 재물로 속죄하는 형태로 서서히 변화해갔다(菊池一隆, 앞의 논문, 3~4면).

한 번인 살상이 대량으로 발생했으리라는 것은 추측하기 어렵지 않지만, 관련 통계가 부실한 현재로서는 이 부분의 서술이 쉽지 않다.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는 어느 정도 불균형한 서술이 될 수밖에 없을 듯하다. 다만 한 일본군 하급병사의 종군 기록을 통해 당시 번인 살상의 상황을 개략적으로나마 짐작해볼 수 있다.

보병으로 징집되어 1912년부터 2년간 ‘이번사업’에 종군한 당시 21세의 가토 도겐(加藤洞源은 범명, 대만에서 돌아간 이후 승려로 활동)은 ‘생변 토벌’에 참가하여 일본군에 의한 번인 살상을 여러 차례 목격한다. 1913년 8월 일본군과의 전투 끝에 항복한 카요우(カコウ)社 번인의 무기 회수에 나선 일본군은 총 50정, 창 70자루, 활 25장(張)을 회수했다. 하지만 번인들이 무기를 일부만 제출하고 나머지를 은닉하고 있다고 판단한 일본군 장교의 명령으로 휘하 사병들은 (번인 귀순식을 거행하면서 번인에게 제공한) 술에 취해 잠든 번인의 가옥을 불태웠고, 화재에서 탈출하려는 번인을 차례차례 사살하거나 참수했다. 다음날까지 이어진 학살로 약 120~130명의 번인이 살해당했다고 가토는 기록하고 있다. ‘이번사업’ 기간에 총독부의 공식 기록으로만 152회의 전투가 일어났으므로, 번인에 대한 학살이 가토의 사례 외에도 다수 발생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다만 이에 관한 실제 전투 참가자의 증언이나 기록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⁸³⁾ 그나마 『統計書』가 1916년부터 1929년까지의 통계를 제시하고 있어서 재구성해보면 아래와 같다.

〈표 6〉 번인 살상, 1916~1929⁸⁴⁾

연도	사	상	합계	연도	사	상	합계
1916	20	0	20	1923	5	0	5
1917	38	0	38	1924	1	0	1
1918	3	0	3	1925	0	0	0

83) 後藤乾一, 앞의 논문, 132면, 135면 및 143~144면.

84) 『統計書』(각년판). 1926년부터 1940년까지 발행된 『警察統計書』도 理蕃 관련 통계를 충실히 제공하지만, 번인 살상과 관련해서는 1926년판과 1927년판만 통계를 제공하고 있다. 『警察統計書』의 통계는 1926년 0명 사망, 1927년 1명 사망으로 『統計書』와 수치 자체는 일치하고 있다. 1916년 이전의 통계로서는, 『宜蘭廳統計書』(1909년판 및 1912년판)가 1907~1912년 관내 번인 살상 통계를 제공하고 있고, 『花蓮港廳統計書』(1916년판)가 1916년 관내 번인 살상 통계를 제공하는 정도이다.

1919	0	0	0	1926	0	0	0
1920	64	1	65	1927	1	0	1
1921	46	5	51	1928	2	0	2
1922	5	0	5	1929	0	1	1
1916~1929 합계	185	7	192	1916~1929 평균	13.2	0.5	13.7

위 표는 ‘이번사업’이 완료된 1915년 이후의 통계이고 내지인이나 한인에 의한 변인 살상은 대부분 1915년 이전에 집중적으로 일어났을 터이므로 내지인이나 대만 한인에 의한 변인 살상의 실상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자료라는 한계가 분명히 있지만, 통계가 제시된 연도의 수치는 비교적 믿을 만한 것 같다.⁸⁵⁾ 특정 연도에 변인의 저항과 진압이 대규모로 발생하여 집중적으로 변인 살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제외하면⁸⁶⁾ 변인 살상 역시 변해나 변인 상호살상과 마찬가지로 점차 감소세에 있었음은 분명한 듯하다. 변지 경찰조직이 변지에 침투하여 안정적인 ‘공권력’을 수립하기 이전에는, 변지의 경제적 잠재력(장뇌, 목재, 토지 등)을 강하게 의식한 한인(과 내지인)이 사적 무장력을 갖추고 일정한 무장집단을 이루어 변인에 대한 물리적 공격을 통해 변지를 획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이 과정에서 한인 측도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했지만, 동시에 한인(과 내지인)에 의한 변인 살상도 다수 발생하고 있었던 것이다. 요컨대 ‘변지 경찰조직의 수립’은 한인(과 내지인)의 변인 살상, 변인의 한인(과 내지인) 살상(변해), 변인 상호간의 살상을 모두 감쇄시키는

85) 예컨대 『臺中州統計書』(1925년판), 134면은 1920년 臺中州에서 발생한 변인 살상이 59명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統計書』는 1920년에 발생한 변인 살상이 64명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1920년은 전술한 사라마오 사건이 일어난 해로 내지인 또는 한인 경찰에 의한 변인 살상과 변인 상호살상이 모두 대규모로 일어난 해이다.

86) 1917년에도 비교적 다수의 변인 살상이 일어났는데, 1917년에는 ① 臺中廳 관내에서 부눈족 일부가 “동부 방면 동족의 사주를 받아 주재소를 포위하고 저항한” 소위 丹大事件이 일어났고(『警察統計書』(1937년판), 211면), ② 新竹廳 관내의 변지 샤카로(シャカロ) 일대에서 변인의 저항이 일어나 연인원 1,800명을 동원한 끝에 진압했으나 총독부 측에서만 82명의 사망자와 100여 명의 중상자를 내는 격렬한 전투가 있었다(又吉盛清, 『大日本帝國植民地下の琉球沖繩と臺灣』, 同時代社, 2018, 196~197면). 총독부 측의 사상자 규모로 보아 변인 측의 사상자 역시 상당한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측되지만 『統計書』는 38명의 사망자를 기록하고 있다.

효과를 가져왔다고 판단된다.

Ⅵ. 맺음말

撫蓄에서 討蓄을 거쳐 治蓄으로 일단 완성을 보게 된 대만총독부의 이번정책 전개 과정에서 번지 경찰조직의 설립과 운영은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였다. 특히 애용·경수로 대표되는 준경찰인력의 창설과 운영은 보통행정구역(=평지)의 경찰조직 운영에서는 볼 수 없는 번지 경찰조직의 독특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또 준경찰인력은 정규 경찰인력의 47.6%에 달할 정도로 방대한 규모였다. 일제하 대만의 경찰력을 평가할 때 준경찰인력의 존재를 무시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아울러 감독소-분견소-애료로 이어지는 번지 경찰관서의 체계가 ‘이번사업’의 완성 이후 주재소로 일원화되는 과정은 달리 말하면 총독부의 번지 통치의 안정화를 반영한 변화이기도 했는데, 번지 경찰관서를 대표하는 주재소는 평지 경찰관서를 대표하는 파출소의 약 52%에 달했고, 그 배치 역시 대단히 촘촘했다. 전체 인구의 약 3%에 불과한 번인 인구를 통제하기 위해 대만총독부가 얼마나 많은 인적·물적 자원을 투입했는지를 엿볼 수 있기도 하다.

이러한 다대한 인적·물적 자원의 투입 결과 번지에는 경찰조직에 의한 일원적인 지배체제가 성립했고, 이는 공인된 폭력으로서의 근대적 공권력이 대만 번지 역사상 최초로 수립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공권력의 수립은 우선 번인이 보유한 총기의 철저한 몰수로 나타났고, 그 결과 번인의 저항력을 근저에서 해체하고 국가권력 이외의 사적 무장력을 거의 허용하지 않는 단계에까지 도달하게 된다. 총기의 철저한 몰수는 번지에서의 다양한 형태의 살상을 크게 줄이는 결과로 이어졌는데, ① 번인에 의한 내지인과 한인 살상뿐만 아니라 ② 번인 간의 상호살상, 나아가 ③ 내지인과 한인에 의한 번인 살상 역시 큰 폭으로 줄일 수 있었다.

다만 이러한 관찰 결과는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우선 ① 번지에 창설되고 운영된 준경찰인력에 대한 이해는 기존의 대만총독부의 경찰력 평가에 적절히 반영될 필요가 있고, 나아가 대만총독부의 총체적인 경찰력을 재검토하는 데까지 나아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⁸⁷⁾ 이는 일본제국의 여타 식민지, 특히 식민지

조선의 경찰력과 비교·검토하는 데에도 일정한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아울러 ② 본고에서는 다루지 못한, 변지 경찰조직의 중요한 구성 요소인 애용선(과 경비도로)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연구 역시 대만총독부의 변지 통치체제를 이해하는 데 불가결하다. 나아가 ③ 변지 통치체제의 수립과 함께 치번 단계에 실시된 변인에 대한 ‘동화’ 또는 ‘문명화’의 실질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들 문제에 대해서는 이후 하나하나 수행해나갈 생각이다.

투고일: 2022.04.21

심사일: 2022.05.26

게재확정일: 2022.06.20

-
- 87) 예컨대 식민지 대만과 조선의 총독부가 지출한 인구 1인당 警察費는 대체로 2(대만):1(조선)에서 2.5:1 사이였다고 평가되는데(문명기, 「일제하 대만·조선총독부의 세출구조 비교분석」, 『한국학논총』(국민대 한국학연구소)44, 2015, 432~434면), 변지 통치를 위해 창설된 준경찰인력, 그리고 약 1만 명의 군경(경찰 8,000명과 군인 2,000명)을 동원하고 총 1,600만 엔에 달하는 거액의 理藩費를 지출한 ‘이번사업’(1910~1914)을 빼고서는 방대한 경찰비 지출을 설명하기 어렵다.

참고문헌

臺灣省行政長官公署統計室 編, 『臺灣省五十一年來統計提要』, 1946

〈警手規程〉, 『臺灣總督府報』 228, 1913년 5월 2일, 國史館臺灣文獻館, 典藏號: 0071020228a003

臺灣總督府 警務局, 『臺灣總督府警察統計書』(각년판)

_____, 『臺灣の警察』, 1932

_____, 『理蕃誌稿』(第3編), 1921

_____, 『理蕃誌稿』(第4編), 1932

_____, 『理蕃誌稿』(第5編), 1938

臺灣總督府 警察官及司獄官練習所 編纂, 『臺灣地方警察實務要論』, 1934(JACAR(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 Ref.A05020354000)

臺灣總督府 警察本署, 『理蕃誌稿』(第1・2編), 1918

臺灣總督府 民政部 蕃務本署 編, 『理蕃概要』, 1913

臺灣總督府, 『臺灣總督府統計書』(각년판)

臺中州, 『臺中州統計書』(1925년판)

鈴木作太郎, 『臺灣の蕃族研究-霧社事件』(南方資料叢書1), 靑史社, 1977(1932년 간행본의 複製)

伊能嘉矩·栗野傳之丞, 『臺灣蕃人事情』, 臺灣總督府民政部文書課, 1900

持地六三郎, 『臺灣殖民政策』, 富山房, 1912

柯志明, 『番頭家-清代臺灣族群政治與熟番地權』, 中央研究院 社會學研究所, 2001

戴國暉 編著, 『臺灣霧社蜂起事件-研究と資料』, 社會思想社, 1981

藤井志津枝, 『理蕃-日本治理臺灣的計策』, 文英堂, 1997

北村嘉惠, 『日本植民地下の臺灣原住民教育史』, 北海道大學出版會, 2008

松岡格, 『臺灣原住民社會の地方化-マイノリティの20世紀』, 研文出版, 2012

矢內原忠雄, 『帝國主義下の臺灣』, 岩波書店, 1929

林修澈, 『原住民重大歷史事件-南庄事件』, 國史館臺灣文獻館, 2007

又吉盛清, 『大日本帝國植民地下の琉球沖繩と臺灣』, 同時代社, 2018

春山明哲, 『近代日本と臺灣-霧社事件・植民地統治政策の研究』, 藤原書店, 2008

台灣原住民研究シンポジウム実行委員會編, 『台灣原住民研究 — 日本と台灣における回顧と展望』, 風響社, 2006年

문명기, 「清末 臺灣 建省과 劉銘傳-재정확보 방안을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7

_____, 「대만·조선의 ‘식민지근대’의 격차-경찰 부문의 비교를 통하여」, 『중국근현대사연구』

- 59, 중국근현대사학회, 2013
- _____, 「일제하 대만·조선 공의제도에 대한 비교사적 접근-제도외적 측면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총』 42, 국민대 한국학연구소, 2014
- _____, 「일제하 대만·조선총독부의 세출구조 비교분석」, 『한국학논총』 44, 국민대 한국학연구소, 2015
- _____, 「國運과 家運-霧峰 林家の 성쇠를 통해 본 국가권력의 교체와 지역엘리트의 운명」, 『중국근현대사연구』 69, 중국근현대사학회, 2016
- _____, 「식민지시대 대만인과 조선인의 야스쿠니신사 합사」, 『중국근현대사연구』 76, 중국근현대사학회, 2017
- _____, 「대만에도 독자적 역사가 있는가?-族群政治(ethnic politics)의 관점에서 본 대만의 역사」,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 학술회의(대만인의 탄생-미·중 갈등과 위기의 다중 정체성) 발표문(2022년 2월 23일)
- _____, 「일제하 대만 경찰력의 재검토-번지 경찰력과 평지 경찰력의 통합적 이해」, 『동양사학연구』 159, 동양사학회, 2022
- 菊池一隆, 「日本の理蕃政策と臺灣原住民-戰時期を中心に」, 『人間文化』 28, 愛知学院大学人間文化研究所紀要, 2013
- 近藤正己, 「臺灣總督府의 ‘理蕃’體制と霧社事件」, 若林正丈 等, 『(岩波講座)近代日本と植民地』(第2卷: 帝國統治の構造, 岩波書店, 1992
- 大江志乃夫, 「植民地戰爭と總督府の成立」, 若林正丈 等, 『(岩波講座)近代日本と植民地』(第2卷: 帝國統治の構造, 岩波書店, 1992
- 李文良 著, 北村嘉惠 譯, 「日本統治時期臺灣における‘理蕃政策」, 和田春樹 等編, 『(岩波講座)東アジア近現代通史』(第3卷), 岩波書店, 2010
- 林一宏·王惠君, 「從隘勇線到駐在所-日治時期李崧山地區理蕃設施之變遷」, 『臺灣史研究』 14-1, 中央研究院 臺灣史研究所, 2007
- 傅琪貽, 「台灣原住民における植民地化と脱植民地化」, 『岩波講座アジア太平洋戦争4』, 岩波書店, 2006
- 山田仁史, 「臺灣原住民の首狩-人類史におけるその位置」, 太魯閣族抗日戰爭史學術研討會(第八回臺日原住民族研究論壇), 2015 발표문
- 石垣直, 「現代臺灣の多文化主義と先住權の行方-‘原住民族’による土地をめぐる權利回復運動の事例から」, 『日本臺灣學會報』 9, 日本臺灣學會, 2007
- 石丸雅邦, 「臺灣日本時代的理蕃警察」, 國立政治大學 政治學系 博士學位論文, 2008
- 小島麗逸, 「日本帝國主義の臺灣山地支配-霧社蜂起事件まで」, 戴國輝 編著, 『臺灣霧社蜂起事件-研究と資料』, 社會思想社, 1981
- 張隆志, 「當代臺灣史學史論綱」, 『臺灣史研究』 16-4, 中央研究院 臺灣史研究所, 2009

- 鄭安晞, 「日治時期蕃地隘勇線的推進與變遷, 1895~1920」, 國立政治大學 民族學系 博士學位論文, 2011
- 周婉窈, 「山·海·平原: 臺灣島史的成立與展望」, 張隆志 編, 『島史的求索-臺灣史論叢(史學篇)』, 臺灣大學出版中心, 2020
- 後藤乾一, 「下級兵士がみた植民地戦争-臺灣における‘生蕃討伐’と加藤洞源」, 『アジア太平洋討究』 9, 早稲田大学アジア太平洋研究センター, 2007

The Formation and Operation of Aborigine Land Government in Colonial Taiwan

— With Focus on Aborigine Land Police System

Moon, Myung-ki

In the process of aboriginal management policies executed by Government-General of Taiwan, the establishment of police organization in aborigine land was one of top priorities. Especially foundation and operation of parapolice manpower represents the uniqueness of police organization in aborigine land, and the scale of parapolice manpower was so huge that the number of parapolice manpower reached almost half the number of entire police manpower, which explains we cannot ignore the importance of parapolice manpower if we want to estimate the whole police force properly.

Also the shift of police station system in aborigine land from airyo(隘寮) to residential police box(駐在所) reflects gradual stabilization of aborigine land governed by Government-General. The number of residential police box which represented aboriginal police station accounted for 52% of that of police stand(派出所) usually stationed in general administration area, which explains how dense the placement of residential police box was. This fact also clearly explains that Government-General of Taiwan invested enormous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in order to govern aborigine land securely.

As a result, a centralized and unitary ruling system by police system was established in aborigine land, and it resulted in the first establishment in Taiwanese history of modern governmental authority in aborigine land, which led to thorough confiscation of firearms from aborigines, and which led to thorough elimination of private armed forces. confiscation of firearms naturally led to reduction both in number of Taiwanese and Japanese casualties harmed by aborigines and in number of aborigine casualties harmed by aborigines themselves.

일제하 臺灣 蕃地 통치체제의 형성과 전개

Key Words : Aborigine Land, Government-General of Taiwan, Aboriginal Management,
Parapolice Manpower, Residential Police Box, Governmental Authority,
Casualties by Aborigines

